

대구지방법원 2000. 6. 9 선고 99가합16181 판결 [구상금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구고등법원 2001. 3. 23 선고 2000나4457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00. 6. 9 선고 99가합16181 판결

전문

원 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×영, 윤♂상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@석

피 고 의♂군

대표자 군수 정▲걸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▼호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▲영

변 론 종 결 2000. 5. 19.

판 결 선 고 2000. 6. 9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83,871,474원 및 이 중 219,898,632원에 대하여는 1996. 11. 27.부터, 107,658,642원에 대하여는 1998. 5. 12.부터, 44,424,000원에 대하여는 1999. 5. 20.부터, 5,080,200원에 대하여는 1999. 7. 2.부터, 6,810,000원에 대하여는 2000. 1. 5.부터 각 2000. 6. 9.까지는 연 5%, 2000. 6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,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639,786,790원 및 이 중 366,497,720원에 대하여는 1996. 11. 27.부터, 179,431,070원에 대하여는 1998. 5. 12.부터, 74,040,000원에 대하여는 1999. 5. 20.부터, 8,467,000원에 대하여는 1999. 7. 2.부터, 11,350,000원에 대하여는 2000. 1. 5.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.

이 유

1. 구상권의 발생

가.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, 3, 4, 5, 8, 9, 10호증의 1, 2(갑

제1호증의 2는 을 제1호증의 5와 같다), 갑 제2호증의 1 내지 3, 갑 제6호증의 1 내지 5, 갑 제7호증의 1 내지 6, 갑 제15, 16호증,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2, 갑 제19호증의 1, 2(을 제1호증의 8, 을 제1호증의 13과 같다),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, 을 제1호증의 6, 7, 9, 11, 12,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,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.

(1) 원고는 1994. 7. 24. 소외 전@출과 그 소유의 경북 XX모XXXX 호 엘란트라 승용차(이하 승용차라 한다)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1995. 7. 25.까지로 하여 위 전@출 내지 그 가족들이 위 승용차를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원고가 이를 배상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.

(2) 위 전@출의 아들인 소외 권▼성은 1995. 1. 8. 22: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소재 184번 국도의 편도 1차로 상을 옥산면 방면에서 점곡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도로포장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약 5.6m 높이의 하천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위 승용차안에 타고 있던 소외 김▲순으로 하여금 제5, 6번 경추체골절 및 사지완전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, 소외 김◆현, 황■호로 하여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.

(3) 위 권▼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하던 도로는 피고 의♂군이 주식회사 우@에 도급을 주어 도로포장확장공사를 시행하던 신설도로로 위 권▼성이 추락한 지점은 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도로가 끊어져 바로 하천으로 연결되는 지점이었고, 그 지점 후방으로 약 21m는 노면이 포장되지 않은 상태였다.

(4)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도로공사의 중단으로 인해 도로가 끊어진 지점임을 차량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지도 않았고,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도 하지 않았을

뿐만 아니라, 기존의 구도로와 이 사건 도로가 갈라지는 지점에도 이 사건 도로로의 차량진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나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시설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.

(5) 원고는 위 김▲순의 상해에 대하여 현대보조기에 1995. 3. 13. 599,200원, ○○대학병원에 1995. 4. 27. 8,518,390원, 1995. 4. 30. 6,222,63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5,340,220원을 치료비로 지급하였고, 위 김▲순 및 그 가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이 법원 95가합26883호 판결에 따라 1996. 11. 26. 350,000,000원을, 대구고등법원 96나6463호 판결에 따라 1998. 5. 11. 추가로 179,431,070원을, 대법원 98다24150호 판결에 따라 1999. 5. 19. 지연이자 74,040,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각 지급하였다. 또한 원고는 위 소송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1999. 4. 30. 5,117,000원, 1998. 12. 29. 1,455,000원을 전@출 변호사에게, 1999. 7. 1. 1,895,000원을 전창열 변호사에게 각 지급하여 변호사 보수로 합계 8,467,000원을 지급하였고, 2000. 1. 5. 위 김▲순 이 이 법원 99가기5573호로 확정 받은 소송비용 11,350,000원을 상환하여 주었다.

(6)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외 김◆현의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로 소외 안◇병원에 1995. 3. 22. 269,800원, 1996. 3. 8. 213,300원을 지급하여 합계 483,100원을 지급하였고, 소외 황♡오의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로 소외 안◇병원에 1995. 3. 22. 314,400원을,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위 황♡오에게 1995. 8. 10. 360,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674,4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김◆현, 황♡오에 대한 치료비 등 지급금액은 그 손해배상 범위 내로서 상당한 금액이다.

나.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인 소외 권▼성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비포장도로에서 과속한 과실과, 이 사건 도로의 설치자이자 관리자인 피고가 도로의 종결지점인 이 사건 사고지점에 차량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표지판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중단된 이 사건 도로에의 진입을 막기 위한

표지판이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, 원고는 위 승용차의 보험자로서, 피고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,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고,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 또는 그 보험자가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 그 책임을 공동면책시켰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을 넘는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, 원고는 상법 제682조 따라 위 공동면책액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,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피보험자인 소외 권▼성과 피고 쌍방의 과실을 비교하여 보면 그 정도는 소외 권▼성이 40%, 피고가 60%로 봄이 상당하다.

2. 구상권의 범위

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공동면책액 및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지출 부분 중 피고측의 책임비율에 상당한 금액과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라 할 것인바, 공동면책액 및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지출 부분 중 피고측의 책임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.

가. 1996. 11. 26. 까지 공동면책분 : 366,497,720원(소외 김▲순에 대한 치료비 15,340,220원 + 96가합26883호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일부금 350,000,000원 + 소외 김◆현에 대한 치료비 483,100원 + 소외 황♡오에 대한 치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금 674,400 원)*0.6=219,898,632원

나. 1998. 5. 11. 공동면책분 : 179,431,070*0.6=107,658,642원

다. 1998. 5. 19. 공동면책분 : 74,040,000원*0.6=44,424,000원

라. 1999. 7. 1. 까지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 지출부분 : 8,467,000원 (변호사 보수)*0.6=5,080,200원

마. 2000. 1. 4.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 지출부분 : 11,350,000원*0.6=6,810,000원

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83,871,474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중 219,898,632원에 대하여는 1996. 11. 27.부터, 107,658,642원에 대하여는 1998. 5. 12.부터, 44,424,000원에 대하여는 1999. 5. 20.부터, 5,080,200원에 대하여는 1999. 7. 2.부터, 6,810,000원에 대하여는 2000. 1. 5.부터 판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, 2000. 6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권순일 판사 박영호 판사 이영복